



##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[시행 2018.1.11.] [충청북도조례 제4125호, 2018.1.11., 제정]

충청북도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여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박물관 및 미술관”이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.
2. “관련법인·단체”란 「민법」, 「상법」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비지원)**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사람 또는 관련 법인·단체(이하 “박물관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시·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  2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
  3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 자료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
  4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
  5.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여 받거나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
-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**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·관리 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실·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
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관련법인·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9조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해촉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
2. 질병·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4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
**제11조(수당과 여비)**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<제4125호, 2018.1.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